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1일

나. 발 의 자 : 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
박세채·양진오·이명희·이지연·이상호·정지원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9일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신 용 하 의원

나. 제안이유

-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원사항·기준 및 법적 대응·지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원신청·결정 및 불이익 금지 조항(안 제7조~제8조)
- 안전관리 시설 관련 사항(안 제9조)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10조~제11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2. 10. 12. ~ 10. 17.)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조례안은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 규정을 담아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2023년 4월 1일에 시행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비(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비,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의 설치와 안전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여,
-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민원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